##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은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514 발의연월일: 2024. 9. 2.

발 의 자 : 김은혜ㆍ이성권ㆍ최보윤

김예지 • 주호영 • 조지연

권영진 • 윤영석 • 유영하

고동진 • 서일준 • 신동욱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하고 있으며, 재건축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 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하고 있고,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택, 부대시설·복리시설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, 각종 계획의 일률적인 기준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기 쉽지 않고, 사업여건에 맞는 유연한 계획 을 수립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임.

이에,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,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고, 재건축사업 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·재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산정 대상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9조).
- 나.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유연하게 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10조).
- 다.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여건과 주민 선호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).
- 라.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요건을 합리화함(안 제35조).
- 마.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는 대상과 인·허가의제 대상을 확대함(안 제50조의2 및 제57조).
- 바.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에 분양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함(안 제72조).
- 사.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하기 이전에도 직접 공 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함(안 제78조).

법률 제 호

##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의2 중 "토지등소유자별"을 "토지등소유자"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"(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)"을 "(임대주택 건설비율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"을 "임대주택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.

제23조제3항 본문 중 "주택, 부대시설·복리시설 및 오피스텔(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. 이하 같다)"을 "건축물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35조제3항 중 "과반수 동의"를 "3분의 1"로, "4분의 3 이상 및"을 "1 00분의 70 이상 및"으로, "4분의 3 이상의"를 "100분의 70 이상의"로 한다.

제50조의2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의 평가에 관한 사항

5의3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제50조의2제3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.

- 6의2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
- 6의3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57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20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120일"을 "90일"로 한다. 제7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⑦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이전(제4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회 의결이 있은 경우로 한정한다)에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증이 요청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통합심의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한다.
제3조(분양공고 통지기한 단축에 관한 적용례) 제72조의 개정규정은

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정비계획의 내용) ① 정비	제9조(정비계획의 내용) ①
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	
포함되어야 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2의2. <u>토지등소유자별</u> 분담금	2의2. <u>토지등소유자</u>
추산액 및 산출근거	
3. ~ 12. (생 략)	3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	제10조(임대주택 건설비율) ①
건설비율) ① 정비계획의 입안	
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	
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	
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	
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	
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	
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<u>임대주택</u>	임대주택
<u>및 주택규모별</u> 건설비율 등을	
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	
1. 「주택법」 제2조제6호에 따	<u>&lt;삭 제&gt;</u>
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(이하	
"국민주택규모 주택"이라 한	
다)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	
9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범위	

- 2. (생략)
- ② (생략)
- 제23조(정비사업의 시행방법) ① · ② (생 략)
  - ③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 분계획에 따라 주택, 부대시설 <u>·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(「건축</u> 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오피스 텔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건설 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. 다만,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하 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 · 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비 구역으로 보는 사업에 한정한 다.
  - ④ 제3항에 따라 오피스텔을 건 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「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 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. 이 경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한다.

- 2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- 제23조(정비사업의 시행방법) ①
  - ② (현행과 같음)

  - ----- 건축물-----

<삭 제>

제35조(조합설립인가 등) ① • ② | 제35조(조합설립인가 등) ① • ②

### (생략)

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(제 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)가 조합 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 의 공동주택의 각 동(복리시설 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 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) 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(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 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다)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 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 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 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 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•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### ④ ~ ⑩ (생 략)

제50조의2(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)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다음 각호 중 둘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(이하 "통합심의"라한다)하여야한다.

(현행과 같음)
③
<u>3분의 1</u>
<u>100분의 70 이상 및</u>
<u>100분의 70 이상의</u>
④ ~ ⑩ (현행과 같음)
제50조의2(사업시행계획의 통합
심의) ①

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신 설>

6. • 7. (생략)

- ② (생략)
-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 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, 정 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속한 지방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제50 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 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 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위의 약 한다.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 회의 구성,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~ 6. (생 략) <신 설>

1. ~ 5. (현행과 같음)
5의2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
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능
위주설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
5의3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
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
<u>사항</u>
6. • 7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③
1. ~ 6. (현행과 같음)

6의2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

### <신 설>

7. · 8. (생략)

④·⑤ (생 략)

제57조(인ㆍ허가등의 의제 등) ① 🛪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 가를 받은 때(시장·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 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 · 허 가 · 결정 · 승인 · 신고 · 등록 · 협의 · 동의 · 심사 · 지정 또는 해제(이하 "인ㆍ허가등"이라 한 다)가 있은 것으로 보며,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 • 허가등의 고시 · 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.

1. ~ 19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위주설계평가단 또는 중앙소
<u>방기술심의위원회</u>
6의3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
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
7. • 8. (현행과 같음)
④·⑤ (현행과 같음)
에57조(인·허가등의 의제 등) ①
1. ~ 19. (현행과 같음)
20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
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

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능

### ② ~ ⑦ (생 략)

제72조(분양공고 및 분양신청)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가 있은 날(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)부 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 하고,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 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 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토지등소 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 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.

- 1. ~ 4. (생 략)
- ② ~ ⑦ (생 략)

제78조(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) ① ~ ⑥ (생 략)

<신 설>

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72조(분양공고 및 분양신청) ①
90일
<u>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78조(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
인가절차 등) ① ~ ⑥ (현행과
같음)
⑦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
의 내용이 제3항제1호 또는 제2

류 제9조의2에 따르 펴의시

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처분계 획인가의 신청 이전(제45조제1 항제10호에 따른 총회 의결이 있은 경우로 한정한다)에 제3항 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 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타 당성 검증이 요청된 것으로 본 다.